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<u>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<u>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</b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